

##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9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2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 제안이유

-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입주 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산업단지관리의 전문화 및 입주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 등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 주요골자

- 민간위탁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산업단지 관리권한에 관한 사항에 “대풍지방산업단지”를 “대풍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”에 위탁하도록 함.

 의안전문 :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 관계법령 발췌 : 별첨

##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대상실과	일련 번호	위탁대상사무명	위탁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범규
기업지원과	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업단지 관리권한에 관한 사항</li> <li>· 청주지방산업단지</li> <li>· 현도지방산업단지</li> <li>· 부용지방산업단지</li> <li>· 대소지방산업단지</li> <li>· 대풍지방산업단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주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</li> <li>현도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</li> <li>부용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</li> <li>대소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</li> <li>대풍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</li> </ul>	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0조, 제31조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구조문 대비표

【별표】

현행				개정안					
대상 실과	일 련 번 호	위탁대상 사무명	위탁대상 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	대상 실과	일 련 번 호	위탁대상 사무명	위탁대상 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기업 지원과	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산업단지 관리 권한에 관한 사항</li> <li>· 청주지방산업 단지</li> <li>· 현도지방산업 단지</li> <li>· 부용지방산업 단지</li> <li>· 대소지방산업 단지</li> <li>&lt;신 설&gt;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주지방산업 단지관리공단</li> <li>현도지방산업 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</li> <li>부용지방산업 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</li> <li>대소지방산업 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업배치및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</li> <li>"</li> <li>"</li> <li>"</li> </ul>	기업 지원과	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산업단지 관리 권한에 관한 사항</li> <li>· 청주지방산업 단지</li> <li>· 현도지방산업 단지</li> <li>· 부용지방산업 단지</li> <li>· 대소지방산업 단지</li> <li>· 대동지방산업 단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주지방산업 단지관리공단</li> <li>현도지방산업 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</li> <li>부용지방산업 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</li> <li>대소지방산업 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</li> <li>대동지방산업 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업배치및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1조</li> </ul>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<지방자치법>

**제95조(사무의 위임등)**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무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 <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>

**제30조(관리권자등)** ①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자원부장관
2. 지방산업단지는 시·도지사
3. 농공단지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
②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관리권자
2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
3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
4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

**제31조(산업단지관리공단등)** ①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②산업단지관리공단(이하 "관리공단"이라 한다)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(이하 "입주기업체협의회"라 한다)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③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(이하 "관리공단등"이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④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⑤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
2.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
3.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4.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

⑥관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⑦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⑧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무관청"은 "관리권자"로 본다.